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정 요건 등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분야별, 가나다순)

분야	유형	세부분야	학교
반도체	단독형 (수도권)	소자·공정, 회로·시스템	가천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단독형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 소자·공정, 패키징	울산과학기술원
	동반성장형 (수도권-비수도권)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고려대학교-인제대학교
		회로·시스템, 소자·공정·패키징	아주대학교-국립한밭대학교
		칩렛 반도체	인하대학교-강원대학교
		첨단반도체, 계측·분석·검사	한국공학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동반성장형 (비수도권)	패키징·테스트	경상국립대학교-국립부경대학교
		소재·부품·장비	국립금오공과대학교-영남대학교
이차전지	단독형	제조·공정, 소재·부품	국립부경대학교
		소재·부품	전남대학교
		제조·공정	한양대학교(ERICA)